

배포 2024. 7. 30.(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7. 30.(화) 회의 종료 시

(지면) 2024. 7. 30.(화) 회의 종료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강화

- 국가 및 지자체,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생활지도 범위, 방법 등 마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장 명단 공표 내용 추가
-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2024.2.6.)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한다.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둘째,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범위·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 명단(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포함)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표한다.

※ (기존)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 (변화)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추가

넷째,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육활동 보호 시책, 영유아 생활지도	영유아지원관 영유아교원지원과	책임자	과 장	최 경 (044-203-7151)
		담당자	사무관	송미선 (044-203-7166)
		담당자	교육연구사	김건형 (044-203-7167)
어린이집 명단공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	책임자	과 장	이승묵 (044-203-7216)
		담당자	사무관	김동경 (044-203-7222)
		담당자	주무관	이건주 (044-203-7226)

주제	주요내용
제20조의9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등)	○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시책을 국가는 5년, 지자체는 1년 주기로 보육활동보호위원회 및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
제20조의10 (보육활동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제20조의11 (시·도보육활동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은 시·도의 보육정책 담당 과장,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제20조의12 (영유아 생활지도)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 - 생활지도의 범위, 방법 등의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함
제20조의4 제2항 (명단 공표의 시기·내용 등)	○ 직장인들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내용 추가* 및 구체화 * 사업장 명칭, 상시근로자 수, 상시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 (추가) 사업주 성명, 명단공표 누적횟수
제24조 제1항 (비용의 보조)	○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20219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여 직장인들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등의 명단을 공표하는 경우 그 공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등의 사업장 명단 공표 시 공표 항목 추가(안 제20조의4제2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의 항목에 더하여 사업주의 성명과 명단 공표 누적 횟수도 공표하도록 함.

나.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절차 등(안 제20조의 9 신설)

교육부장관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시·도지사는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각각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다. 영유아 생활지도(안 제20조의12 신설)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학업, 보건 및 안전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음을 명시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지도하지 못하도록 함.

라. 보조 대상 인건비의 범위 확대(안 제24조제1항)

종전에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9. ~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직장인 보육부담 경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보육진흥원”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명단 공표의 시기·방법 등)”을 “(명단 공표의 시기·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이 경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및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3. 해당 사업장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4.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제20조의9부터 제20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하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1(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해당 시·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영유아 보육 관련 경력이 15년 이상인 보육교직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활동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 칙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u>한국보육진흥원</u>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u>한국보육진흥원</u>의 장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으로서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p> <p>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방법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명단에는 해당 <u>사업장의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 및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제16조의3(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 ----- <u>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u>-----.</p> <p>② ----- ----- <u>진흥원</u>----- ----- ----- -----.</p> <p>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의 <u>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p>1. <u>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이 경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u></p> <p>2. <u>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및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u></p>

<신 설>

3. 해당 사업장의 명단 공표 누
적 횟수

4. 해당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제20조의9(보육교직원의 보육 활
동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보
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법 제18조
의4제1항에 따른 보육활동보호
위원회(이하 “보육활동보호위
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
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
려는 경우에는 보육활동보호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시책
을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이
하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
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
년 2월 말일까지 수립·시행해

<신 설>

야 한다. 이 경우 수립한 시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수립 또는 변경한 시책을 제출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진흥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의10(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

람이 된다.

③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11(시·도보육활동보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
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
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互選)한다.

1. 해당 시·도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영유아 보육 관련 경력이 15
년 이상인 보육교직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보육활
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
람

4. 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하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5.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보육활동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하고,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시·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2.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3.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신 설>

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12(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법 제18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영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영유아의 생활과 관련된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

를 보조한다. 1. (생략) 2. <u>보육교사 인건비</u> 3. ~ 7. (생략) ②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u>보육교직원 인건비</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연락처	(044) 203 - 7166